

제 25 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당사 정관 제 20 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25 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개 최 일 시 : 2020 년 02 월 17 일(월) 오전 10 시

2. 개 최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번길, 58 501 호 (㈜씨프로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 의안내용

- 제 1 호의안 1 주 금액 변경의 건

* 1 주 = 5,000 원 >>> 1 주 500 원

- 제 2 호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 (별첨 1 주요 정관변경내용참조)

4.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사항

- 직접행사 : 신분증, 법인(개인)인감, 법인(개인)인감증명서(주총일 3 개월 이내)

- 대리참석 : 위임장(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주총일 기준 3 개월 이내), 대리인의 신분증

< 별 첨 >

1. 정관 변경

2. 위임장 1 부

2020 년 02 월 03 일

주식회사 씨프로

대표이사 이영수(직인생략)

개정 전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씨프로 라 한다. 영문으로는 C Pro Electronics Co.,Ltd. 로 칭한다.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씨프로 라 한다. 영문으로는 CPro Electronics Co.,Ltd.(약호 CPRO) 로 칭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주로 한다.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2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9종류로 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④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2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9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신설]	제 8 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개정 전	개정안
<p>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의 규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3의 규정 등 관계법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p> <p>4.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까지 배정하는 경우</p> <p>7.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p> <p>4.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배정하는 경우</p> <p>7.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신설]</p>	<p>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p> <p>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p> <p>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p>

개정 전	개정안
	<p>「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p>
<p>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후략...</p>	<p>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후략...</p>
<p>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당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p>	<p>제 16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당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p> <p>④ 제 1 항에서 제 3 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p>
<p>[신설]</p>	<p>제 16 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p>
<h2>제 3 장 사 채</h2>	
<p>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당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p>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p> <p>① 당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정 전	개정안
<p>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임원, 종업원 및 기타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후략...</p>	<p>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4.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 종업원 및 기타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중략...</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당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p> <p>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4.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 임원, 종업원 및 기타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상법 제516조의 2 제4항 후단이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후략...</p>	<p>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당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4.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 종업원 및 기타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6.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16 조의 2 제 4 항 후단이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p>

개정 전	개정안
	<p>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중략...</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신설]	<p>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p>
[신설]	<p>제19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p>
<h2>제 4 장 주 주 총 회</h2>	
제 18 조 (소집시기)	제 20 조 (소집시기)
제 19 조 (소집권자)	<p>제 21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p> <p>④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 191 조의 10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혹은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중략...</p> <p>④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 21 조 (소집지)	제 23 조 (소집지)
<p>제 22 조 (의장)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p>	<p>제 24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개정 전	개정안
제 23 조 ~ 제 29 조	제 25 조 ~ 제 31 조
제5장 임원과 이사회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30 조 ~ 제 45 조	[삭제]
[신설]	제1절 이사
	제 32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0 명 이내로 하고, 사외 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3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5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 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개정 전	개정안
[신설]	제2절 이사회
	<p>제 38 조 (이사의회의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이사회회의 의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로 한다.</p> <p>⑥ 이사는 3 개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39 조 (이사의회의 결의방법)</p> <p>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p> <p>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 40 조 (이사의회의 의사록)</p> <p>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p> <p>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p>
[신설]	제 3 절 대표이사
	<p>제 42 조 (대표이사의 선임)</p> <p>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제 43 조 (대표이사의 직무)</p> <p>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p>
제6장 감 사	
	<p>제 44 조 (감사의 수)</p> <p>이 회사의 감사는 1 인 이상 2 인 이내로 한다.</p>
	<p>제 45 조 (감사의 선임)</p>

개정 전	개정안
	<p>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제 46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p> <p>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p> <p>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 47 조 (감사의 직무 등)</p> <p>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 36 조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 제 6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p>

개정 전	개정안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8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9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h2>제7장 회계</h2>	
제 46 조 (사업년도)	제 50 조 (사업연도)
제 47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 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 5 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	제 52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개정 전	개정안
실을 보고한다.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이익금의 처분)	제 53 조 (이익금의 처분)
제 50 조 (이익배당)	제 54 조 (이익배당)
제 51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55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부 칙	
제 52 조 (최초의 영업년도)	제 56 조 (최초의 영업년도)
제 53 조 (발기인)	제 57 조 (발기인)
부 칙	
[신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 년 00 월 00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8 조의 2, 제 14 조 3 항, 제 16 조, 제 16 조의 2, 제 19 조, 제 19 조의 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 한다.
[신설]	제 2 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